



제7차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

당헌 제21조(소집),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7차 중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델리민주 온라인 생중계)

□ 안건

- 강령 개정의 건
- 당헌 개정의 건

※ 안건 처리 방식 : 온라인 투표(8.11 09:00 ~ 18:00)에 의한 의결

2026. 8. 4.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당헌 개정안 공고

제39차 당무위원회(2026.8.3.)에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였기에, 당헌 제108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헌 개정안을 공고함

- 아 래 -

□ 제3장 대의기관

- 전국당원대회 추천직 대의원도 공직·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대의원 구성의 형평성과 대표성을 확보
 -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대의원을 공직·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당헌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案)
당헌 제15조	
제15조(지위와 구성) ①~② <생략>	제15조(지위와 구성) ①~② <생략>
1. ~ 16. <생략>	1. ~ 16. <생략>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8.~ 19. <생략>	18.~ 19. <생략>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1. <이하 생략>	21. <이하 생략>
③~④ <생략>	③~④ <생략>
⑤제2항제19호 및 제21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4.8.12.>	⑤제2항제17호·제19호·제20호·제21호의 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 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4.8.12.>

□ 제4장 집행기관

○ 전략지역 심의·결정 권한 명확화

- 당헌·당규에서 전략지역과 취약지역의 용어가 혼재하고, 전략지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최종 결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기준을 정비
- 당직선거·공천·조직·당비 등 각 당무를 담당하는 각급 심의 주체가 해당 목적에 맞는 전략지역을 먼저 심의·제청함
- 이후 당무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당헌 제23조에 권한을 명시함

<<당헌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案)
당헌 제23조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개정안의 심의와 발의	4.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개정안의 심의와 발의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6.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6.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7. 전국당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개정 2024.6.17.>	7. 전국당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개정 2024.6.17.>
8.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8.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9.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9.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10.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당원대회의 승인 <개정 2024.6.17.>	10.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당원대회의 승인 <개정 2024.6.17.>
11.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당원대회의 승인 <개정 2024.6.17.>	11.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당원대회의 승인 <개정 2024.6.17.>
12.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12.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13. 전국당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개정 2024.6.17.>	13. 전국당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개정 2024.6.17.>
14. 임시전국당원대회, 임시 시·도당당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개정 2024.6.17.>	14. 임시전국당원대회, 임시 시·도당당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개정 2024.6.17.>

15.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16. 당무활동 보고 요구

15.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16. 당무활동 보고 요구

<신설> 17. 각급위원회가 제정한 전략지역에 대한 결정 권한

17.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18.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1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19.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당헌 제8조·제90조

제8조(성평등 실현) ①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
<개정 2024.8.12.>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단,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제90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제87조의3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중 100분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4>

② <삭제 2020.3.14>

③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4>

④경제, 외교, 안보 등 위원회가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민공천심사단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14>

⑤**당 취약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제8조(성평등 실현) ①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
<개정 2024.8.12.>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단,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등 **전략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제90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제87조의3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중 100분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4>

② <삭제 2020.3.14>

③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4>

④경제, 외교, 안보 등 위원회가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민공천심사단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14>

⑤**전략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활동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에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4>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에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4>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8장 지방조직

○ 시·도당위원장 선출 투표 반영비율 정비

- 현행 선거에서는 시·도당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를 동일한 가치로 반영하고 있으나, 당헌에 각각의 반영비율이 구분되어 있어 표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선출 방식에 맞게 규정을 정비

○ 시·도당위원장 권한 규정 정비

- 선거기간 등 긴급한 당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일부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해 왔으나,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우려되어 위임사항 처리 근거를 마련함
-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당헌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案)
당헌 제67조	
제67조(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당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를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7.> <신설>	제67조(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당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선출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7.> ③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④시·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이 직무대행 운영위원을 지명하지 아니	④시·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이 직무대행 운영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할 때

할 때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⑤사퇴 등으로 인한 시·도당위원장 궐위 시에는 직무대행 임명 또는 사고당부 확정 전까지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8.26.>	⑤사퇴 등으로 인한 시·도당위원장 궐위 시에는 직무대행 임명 또는 사고당부 확정 전까지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8.26.>
⑤→⑥시·도당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4.8.12.>	⑥시·도당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4.8.12.>

□ 제12장 공직선거

- 당헌 제98조제5항의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적용 조항을 “제2항과 제3항”에서 “제3항과 제4항”으로 정정

<<당헌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案)
당헌 제98조	
제98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제98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②경선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당원경선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5.12.15.>	②경선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당원경선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5.12.15.>
③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5.12.15.>	③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5.12.15.>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④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당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17., 2025.12.15.> ⑤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④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당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17., 2025.12.15.> ⑤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	--

□ 사회연대경제위원회 관련 문구 수정

- 국제기준과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변경

<<당헌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案)
당헌 제19조·제32조·제64조·제68조·제70조	
제19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개정 2024.6.17.>	제19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개정 2024.6.17.>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1. 당대표
2. 원내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3. 최고위원
4. ~21. <생략>	4. ~21. <생략>
2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u>사회적경제위원회</u> ,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개정 2022.8.26., 2024.8.12.>	2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u>사회연대경제위원회</u> ,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개정 2022.8.26., 2024.8.12.>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제32조(전국위원회) ①성, 세대, 계층 등 사회적 계층 및 부문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개정 2024.8.12.>
4. 전국대학생위원회
5. 전국장애인위원회
6. 전국노동위원회
7. 전국농어민위원회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9. 사회적경제위원회

10.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설 2022.8.26., 개정 2024.8.12.>

②전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헌·당규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4조(구성) ①<생략>

②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위원장
2. 지역구국회의원
3. 시·도당의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실버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다문화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개정 2022.8.26.>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6.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장단
7.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위원

제32조(전국위원회) ①성, 세대, 계층 등 사회적 계층 및 부문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개정 2024.8.12.>
4. 전국대학생위원회
5. 전국장애인위원회
6. 전국노동위원회
7. 전국농어민위원회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9. 사회연대경제위원회

10.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설 2022.8.26., 개정 2024.8.12.>

②전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헌·당규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4조(구성) ①<생략>

②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위원장
2. 지역구국회의원
3. 시·도당의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실버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연대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다문화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개정 2022.8.26.>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6.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장단
7.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위원

③<생략>

제6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실버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다문화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26.>

<이하 생략>

제70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시·도당에 상임고문과 고문,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실버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26.>

③시·도당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생략>

제6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실버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연대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다문화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26.>

<이하 생략>

제70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시·도당에 상임고문과 고문,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실버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26.>

③시·도당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